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



구 미 시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

| | |
|----------|--|
|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5. 7.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구미시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소각시설의 처리용량 부족으로 환경자원화시설 부지 내 폐기물의 장기간 적체 등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잔여 폐기물을 위탁 처리중이며,
- 나. 기존 소각시설의 노후화로 소각 효율 저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 부지 내 소각시설의 증설을 통해 증가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향상 및 신뢰성 회복을 이루고자 함.
- 다. 한국환경공단 및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본 사업의 적격성 및 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우리시로 통보하였고 입지선정위원회 전원찬성으로 환경자원화시설 입지 변경 동의 절차가 완료되어
- 라. 의회 동의 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여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증가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목표로 현대화된 처리시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자 함.
- 마. 이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개요

- (1) 사업명 :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 (2) 총사업비 : 793억원 *주민편익시설사업비 100억 정도 포함
[국 197(25%), 도 59(7%), 시 139(17%), 원인가 155(20%), 민간 243(31%)]
※ 사업비 등은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재원협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3) 사업위치 : 구미시 산동읍 송백로 499 일원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부지 내)
- (4) 사업량 : 소각시설 150톤/일, 주민편익시설 1식
- (5) 공사기간 : 33개월(시운전 포함)
- (6) 운영기간 : 준공일로부터 20년

나. 사업의 필요성

- (1)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발열량 증가에 따라 기존 소각시설 처리용량 (200톤/일)을 초과하여 연간 약 21,000톤의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등을 외부 위탁처리하고 있음.
- (2) 외부 위탁 폐기물(대형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협잡물 등)의 연계처리체계 구축으로 위탁처리비 예산절감 및 환경오염물질 이동 최소화
- (3) 기존 소각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소각효율 저하에 대비하고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추가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함.

다. 추진현황

- 2021. 01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 2022. 06 : 민자적격성 검토 완료 (한국환경공단)
- 2023. 05 : 사업타당성 검토 완료 (지방행정연구원)

※ 민자적격성 검토결과

- 조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 조사기간 : 2021. 4 ~ 2022. 6
- 검토결과 : 민자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VFM(민자적격성) : 5.5%(VFM >0 이상 적격성 확보)]

* VFM(Value for Money)이란? : 재정사업 대비 민자사업의 비용 절감액을 나타내는 지표로, “0” 이상일 경우 민자사업의 적격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

※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 조사기관 : 지방행정연구원
- 조사기간 : 2022. 6 ~ 2023. 5
- 검토결과 : 증설용량 의뢰안(150톤/)과 동일

- 2023. 11 : 입지선정위원회 위촉 및 1차 회의 개최
- 2025. 06 : 입지선정위원회 2차 회의 개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입지 변경 동의 가결)

라. 향후계획

- 2025. 07 : 시의회 동의안 의결
- 2025. 07 :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 2025. 12 : 제3자 제안공고
- 2026. 04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2027. 01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27. 12 : 실시계획 승인
- 2028. 03 : 공사 착공 (공사기간 33개월)
- 2030. 12 : 공사 준공 및 운영 개시

마. 의무부담행위

(1) 의무부담금액

(단위: 억원)

| 사업명 | 사업량 | 총사업비 | 의무부담액 (운영비/20년간) |
|-------------------------------|---------------------------|------|---------------------|
|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 | 소각시설 150톤/일, 주민편익시설 1식 | 793 | 1,451 |

- 총사업비(793억원) : 국 197(25%), 도 59(7%), 시 139(17%), 원인자 155(20%), 민간 24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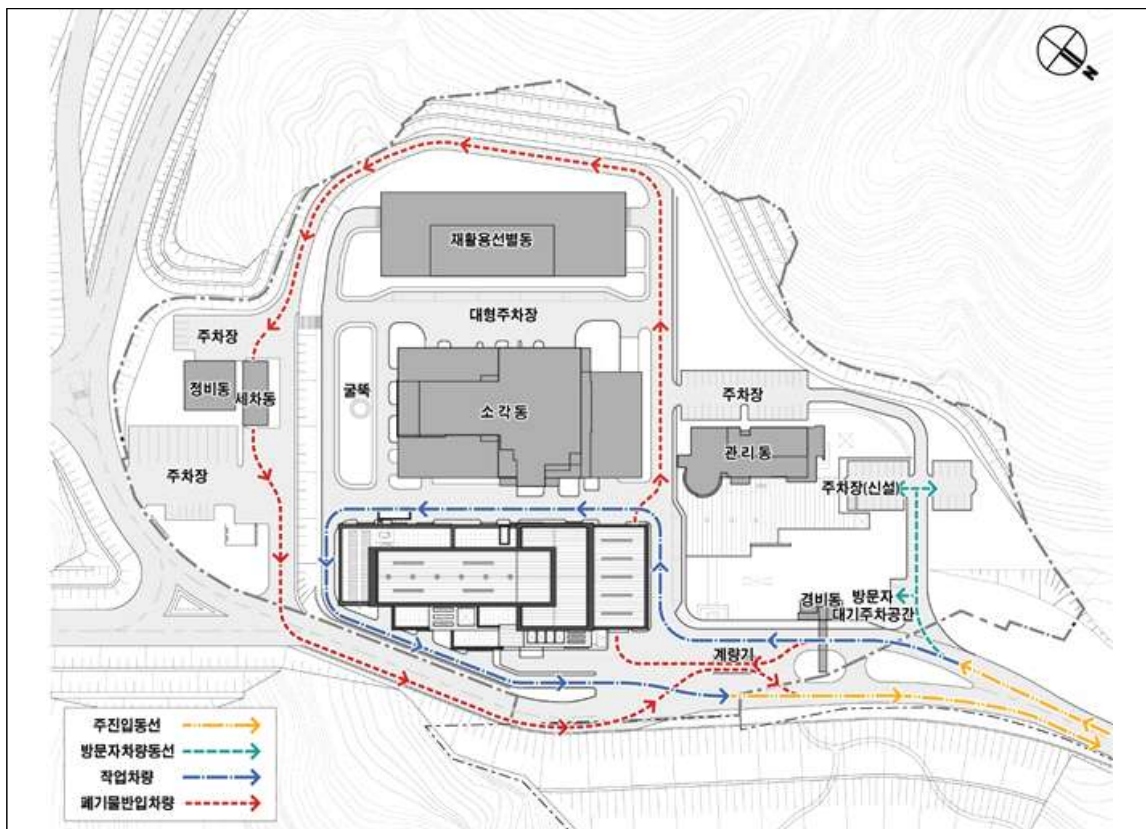
- 의무부담액(1,451억원) : 톤당단가 161,218원 × 150톤/일 × 300일/년 × 20년

※ 총사업비, 의무부담액은 실시협상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의무부담 관리기간 : 준공후 20년

바. 시설배치도 및 조감도

○ 시설배치도



○ 조감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나. 예산조치 : 2028년 ~ 준공후 20년간 예산편성

다. 환경자원화시설 입지 변경 동의 관련 주변마을 주민지원계획

○ 산동읍 주민소득사업 시행

- 백현2리 주민협의회 : 태양광발전 200kW

- 송백주민협의회(백현1리,송산리) : 태양광발전 200kW

○ 장천면 주민숙원사업 5억원

○ 주민지원기금 미조성액(2011년~2023년) 연차(5개년)별 조성(20억원 정도)

○ 증설 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20%이내 조성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020.12.10. 개정)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에 따른 세출 발생
- 「폐기물관리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25, 환경부)

2. 비용추계의 전제

| 구 분 | | 금액(억원) |
|----------|-------|--------|
| 합 계(①+②) | | 2,244 |
| ①총사업비 | | 793 |
| | 공사비 | 658 |
| | 조사비 | 1 |
| | 설계비 | 18 |
| | 부대비 | 51 |
| | 제세공과금 | 59 |
| | 영업준비금 | 6 |
| ②운영비 | | 1,451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 구분 | | 연도 | | | | | 합계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
| 세입 | ○ 국고보조금 | - | 32 | 57 | 108 | - | 197 |
| | ○ 도비보조금 | - | 9 | 17 | 33 | - | 59 |
| | ○ 원인자부담금* | - | 25 | 45 | 85 | - | 155 |
| | ○ 민간 | 18 | 53 | 60 | 112 | - | 243 |
| | 소계(a) | 18 | 119 | 179 | 338 | - | 654 |
| 세출 | ○ 공사비 등 | 18 | 141 | 219 | 415 | - | 793 |
| | ○ 운영비 | - | - | - | - | 73** | 73 |
| | 소계(b) | 18 | 141 | 219 | 415 | 73 | 866 |
| □ 총 비용(a-b) | | - | 22 | 40 | 77 | 73 | 212 |

* 원인자부담금 : 폐기물시설축진법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 2. 비용추계의 전제 ②운영비 1,451억원/20년 ≙ 73억원/년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억원)

| 구분 | | 연도 | | | | | 합계 |
|--------|---|------|------|------|------|------|-----|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
| 국 | 비 | - | 32 | 57 | 108 | - | 197 |
| 도 | 비 | - | 9 | 17 | 33 | - | 59 |
| 시 | 비 | - | 22 | 40 | 77 | 73 | 212 |
| 원인자부담금 | | - | 25 | 45 | 85 | - | 155 |
| 민 | 간 | 18 | 53 | 60 | 112 | - | 243 |
| 합 계 | | 18 | 141 | 219 | 415 | 73 | 866 |

5. 부대의견

○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재원협의 등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자원순환과 자원시설조성TF팀 유병호(☎480-5227)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소 관 부 서 | | 자 원 순 환 과 |
|-------------|-------|---------------------|
| 입 안 자 | 과 장 | 김 형 순 |
| | 팀 장 | 유 지 영 |
| | 담 당 자 | 유 병 호 (480-5227) |